

# 유산기부 PLAN GIVING

v.1

## 유산기부 가이드

효산의료재단 대외협력기금팀



*Remember you*

## 1. 들어가며

통계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유산기부 의향이 매우 높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이 사회로 환원된 실제 사례를 주변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혹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한 소위 ‘할머니 기부’ 미담만이 있을 뿐입니다. 혹자는 유산기부는 부유층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산기부는 그 크기와 관계없이 삶을 뜻있게 살고 의미 있게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유산기부를 마음에 품었지만 법이 정한 엄격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아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를 언론을 통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유산기부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가이드에 담고 있지 않은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유산기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 유산기부의 의미

‘유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산기부를 하신 분들께 기부 이유를 여쭙보면 평생을 소중하게 모은 재산이 함부로 쓰여 지길 바라지 않는 다라며 재산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애착은 돈에 대한 것 보다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왔던 ‘평생’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산기부에는 사회에 전하고 싶은 다양한 사람들의 ‘평생’이 담겨있습니다.

###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 공부 잘하게 잘 해주세요. 난 그게 소원이예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다른 건 바랄게 없어. 그 사람들이 출세해서 잘 살면 내가 기쁜거지. 부모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날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거라 생각해요.”

항복란평생의꿈 장학기금 출연자, 故항복란님

### 생전의 일, 신념을 이어가다

“평생 못다 이룬 꿈을 지속하기 위해 평생을 매달린 풍력발전에 공헌한 사람들과 공익단체 활동가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호민기우봉 기금 출연자, 故기우봉님

### 사회에 남긴 것은 영원하다

“무엇을 남길까 아프면서 줄곧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누구나 바라 것, 내 뒤에서 최선을 주고 가고 싶은 거지요. 허투루 쓰지 말고 오래도록 남겨 주십시오.”

호민기우봉 기금, 출연자 故기우봉님

### 가족에게 남기는 정신적 유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50억원을 6형제가 나눠 줄어들게 하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해 남들과 함께 나누니 훨씬 더 행복해요”

아름다운세상 기금의 출연자, (주)아모레퍼시픽 창업주 故장원 서성한 회장의 가족

### 아름다운 이별과 치유

“유산기금을 남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애뜻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아리고 아팠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너를 좋은 향기로 기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기억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얻은 기분이다. 이런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어서 너무 고맙다”

박영미 유산기금의 매칭기부자, 故박영미님의 선배 심선경님

# 3. 유산기부 방법 FAQ

## 1. 유산을 남기는 법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유언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지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통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공익법인에 유산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증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5가지 방법중 하나로 하면 되는데 이중 유언자가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는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는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유언대용신탁이나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실 수 있습니다.

## 2. 유언장 작성시 유의해야 할 점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시 반드시 지켜야할 요건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손으로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를 반드시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필증서는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하지만 위조, 변조, 멸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선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권유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절차가 복잡하고 공증비용이 발생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고 유언서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보관하므로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 3. 효산의료재단에 대한 유산기부는 어떻게 진행되니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유산기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상담 : 기부자산(부동산, 현금자산, 유가증권, 기타) 확인과 평가, 지원사업등 기부자의 의사 확인

기부컨설팅 위원회 자문 : 기부자산 평가 및 소유권 이전의 절차 자문

기부 협약서 및 유언장 작성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시 증인2과 유언집행인 필요

유언장 공증 및 유산기부 약정식 : 기부자와 협의한 내용을 담은 협약서 작성

사후 유언집행

유산기금 조성하여 지원사업 게시 및 유가족 예우

#### 4. 효산의료재단에 유산을 기부 하면어디에 쓰이나요?

효산의료재단은 유산기부를 약정하실 때 기부자와 협의한 내용을 담은 유산기금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협약서에는 유산기금의 운용방법, 기금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등을 명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따라서 기부자는 본인이 뜻하는 지원사업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유가족이 향후 기금사업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5. 유산기부자 예우 및 서비스를 알고 싶습니다.

- ① 효산의료재단에 유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법률, 세무회계, 금융,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상속증여의 절차와 방법을 자문해 드립니다.
- ② 효산의료재단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임 할 수도 있습니다(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분을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산의료재단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시면 상속전문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신속 하고 공정하게 기부자가 뜻한 바대로 유언을 집행할수 있습니다.
- ③ 유산상속이 개시되어 약정하신 유산이 사회환원될 때 기부자가 명명한 이름으로 유산기금이 개설되어 사회에 남기신 뜻을 영원히 기리게 됩니다.
- ④ 유산기금 출연자로서의 멤버십을 부여받아 생전에 기금을 출연하신 분들과 같은 명예와 관련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 기부하려는 유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이든 기부할 수 있습니까?

효산의료재단의 부동산 기부 수용의 원칙은 부동산 기부 이후(소유권이전 이후) 즉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없어 매매가 어려운 부동산이거나 공유자가 있는 부동산,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로 매각 후 실질적인 기부액이 관리 비용보다 적은 부동산, 취득자격 제한이 있는 농지 등은 부동산의 물건별로 기부수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효산의료재단에 부동산 기부 상담을 하시면 자문위원회의 부동산 평가 이후 기부수용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효산의료재단은 부동산 기부 관련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통해 최대한 기부자의 의사를 수용하여 사회 환원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7. 유산 기부 시 유가족이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피상속인이 유증을 통해 공익법인에 유산을 기부한 경우 및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 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기부 시 세금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공익법인에 기부하시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유산 기부시에도 기부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기부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며, 이후 공익법인이 이를 매각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9.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기부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은 상속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 하는 상속 등기를 한 후에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기부하실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등기의 과정부터 기부까지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 위원회 자문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 3. 유산기부 관련용어 설명

## 1.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를 유증이라고 하며,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이 정한 5가지의 유언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유언을 하여야 합니다. 5가지 유언방식 외 다른 방식으로 한 경우에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한 유언방식 5가지에는

-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직접 손으로 쓰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로 작성하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하기 (녹음에 의한 유언)
- 다른 사람에게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여 대신 받아 적게 하는 방식으로 유언하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가 있습니다.

이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산의 사회환원 방식으로서 일반적입니다. 자필증서는 간편하게 작성 할 수 있으나 위조, 변조, 멸실의 우려가 있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권유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는 유언의 내용은

- 유증/유언신탁/재단법인 설립/친생부인/인지/후견인 지정/상속재산 분할금지/유언집행자 지정 및 위탁 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유언을 남길 때에는 법률상 유언사항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남기는 마지막 인사, 장례식의 형식 및 제사, 시신 이나 장기 기증 의사, 채무 존재,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목록, 보험 계약의 존재와 보험금 수령자 등을 유언장에 기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상속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이때 상속인의 순서와 범위를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순서	상속인	법정 상속분
1순위	배우자와 자녀 (자녀가 없으면 손자)	배우자는 1.5. 자녀 한 명당 1
2순위	배우자와 부모	배우자는 1.5 자녀 한 명당1
3순위	형제자매	각자1
4순위	3촌인 방계혈족	각자1
5순위	4촌인 방계혈족	각자1

## 3. 유류분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상속인	유류분
자녀(자녀 없으면 손자),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형제 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3촌, 4촌의 혈족	해당사항 없음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 가액 = (유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전액) × 유류분 비율

## 4. 유언대용 신탁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금융권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통해 고객(위탁자)이 신탁재산의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상속이나 유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로 상속인뿐 아니라 공익법인도 지정할 수 있어 일부 재산은 가족에게 상속시키면서 일부 재산은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의 Private Bank센터

## 5.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신고
- 2) 사인증여재산, 유증재산, 상속재산(상속채무 포함) 파악
- 3) 절세 대책 마련
- 4) 상속재산 분할 협의(원하는 경우에 한함)
- 5) 상속세 납부 계획 등 자금계획
- 6) 상속세 신고, 납부

이 때 공익법인 등에 기부를 통해 상속세 절감을 하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해야 합니다.

## 6.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했을 때 상속세 표준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기부하면 결과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 7. 맞춤형 기금

효산의료재단은 독립재단 설립의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기부자의 귀한 기부금을 원하시는 지원 사업에 사용해 우리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율적인 나눔이 되도록 맞춤형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초기 출연금으로 효산의료재단의 기금을 만들 수 있으며, 이후 본인의 추가 기부 및 가족, 이웃, 친구들의 매칭기부(matching gift)로 기금을 지속적으로 크게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기금은 독립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기금담당자를 통해 기금운용과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기금의 종류

- 가족기금 가족들이 함께 기부하고 함께 보람을 느끼는 기금으로, 우리가족만의 나눔 역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추모기금 생각만으로도 먹먹해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 아이, 아내의 이름으로, 고인을 가장 아름답게 추모하고 추억하는 기금입니다.
- 유산기금 내가 죽은 후 남기게 될 재산으로 후손들이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회 환원을 약속하여 만드는 기금입니다.

## 소 개

- 홈페이지 [www.samforlove.com](http://www.samforlove.com)
- 대표전화 031-389-37
- 주 소 435-010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91 G샘병원 7층 대외협력기금팀